

# 美國의 學校圖書館基準

金 京 一

## 一 改訂에 關한 考察

美國圖書館協會에서는 1960년에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s를 새로 히 發刊하였다. 이 基準은 同協會에서 1945년에 發表된 戰後計劃委員會(Pastwar Planning Committee)에 依하여 國家的인 基準으로서 發刊된 School libraries for today and tomorrow (現在와 未來의 學校圖書館)의 大幅의인 改訂으로서 1945年以後의 急進의인 學校圖書館의 發展에 適應시킴에 있어서 全國의인 것인 될뿐만 아니라 量的인 面에 더욱 比重을 크게 든 基準이라고 볼수 있다. 이 基準은 美國의 20個의 教育團體의 代表者들로서 組織된 School Libraries Committee (學校圖書館委員會)에 依하여 作成된 것으로서 多方面의 教育專門家들의 協助로서 3年餘라는 期間 慎重히 研究 檢討하여 成案된 것이며 美國의 學校圖書館의 發展過程에서 必然性을 갖인 待望의 基準으로서 그의 內容도 1945年の 基準의 數倍 (이 基準의 面數는 132面)에 達할 뿐 만 아니라 內容이 보다 具體的이며 豐富한 것으로서 學校圖書館의 發展에 增져주는 그의 價值와 影響은 크다고 아니 볼수 없다. 韓國의 學校圖書館界에 爽지 않게 資料로서 提供된 1945年の School libraries for today and tomorrow는 美國에서는 이미 낡은 資料가 되여 버렸다. 이 基準은 學校圖書館을 教材와 資料 센터로서의 性格을 뚜

렷이 規定지여져 있다.

革命政府의 1962年度의 文教獎學計劃에도 從來에 없든 國民學校 中高等學校의 圖書館設置와 運營의 強化를 為한 方針들이 樹立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韓國의 文化發展의 源泉이 되는 圖書館法의 通過도 目前에 두고 머지 않아 法의 施行을 為한 基準을 制定하여야 할 오늘의 圖書館界에 이 基準資料는 많은 參考의 價值를 가지고 있음을 確信하는 바이다.

筆者가 昨年에 이 基準을 梨大圖書館學科에서 入手하여 研究할 機會을 얻어 이의 翻譯도 心算해 보았으나 出版이 어려운 事情에서 中斷하게 됨을 慘忍히 생각하며 이미 生命을 잃은 文教部令의 中學校高等學校 師範學校施設基準令의 學校圖書館條文의 矛盾性을 다시 한번 痛切히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基準을 全國의 教育家는 勿論이지만 文教部의 關係官들에게 參考로서 寄與하는 意圖에서 紙面上全文은 翻譯할 수 없으나 이 基準의 大略과 重要한 部分만 몇가지 紹介하려고 하는 바이다.

## 二 基準의 內容

이 基準의 內容은 大略 다음과 같이 編成되어 있다.

第1部 教育力으로서의 學校圖書館.

第1章 學校圖書館의 必要性.

第2章 學校에 있어서의 圖書館計劃의

目的과 範圍

- 第3章 青少年에 對한 學校圖書館計劃  
 第4章 學校圖書館計劃에 必要한 資料,  
 象算, 人員.  
 第2部 學校圖書館計劃의 成案과 實行.  
 第5章 學校教育의 行政組織과 學校圖  
 書館  
 第6章 學校圖書館獎學官  
 第7章 學校圖書館職員  
 第8章 커리큐럼主任, 教師 및 學校圖書  
 館.
- 第3部 指導와 教科資料.  
 第9章 資料集成, 選擇의 範圍.  
 第10章 學校圖書館資料組織.  
 第11章 세로운 學校에 있어서의 圖書  
 館.  
 第12章 學校에 있어서의 圖書館資料와  
 奉仕.  
 第13章 學校圖書館에 對한 地域的協助  
 計劃.
- 附錄 在籍數 200名 또는 그 以上의 學  
 校에서의 學校圖書館의 施設備品  
 의 基準規格

이 以外에도 이 基準에는 討論指導 (Discussion guide)의 別책이 包含되어 있으며 또한 이 基準을 研究, 討議하기 爲한 討議方法, 主題가 되는 重要한 다섯 가지의 問題가 取扱되어 있다. 매우 科學의이며 慎重한 編輯으로서 이 基準을 各己研究하는데도 좋은 指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例舉한 各節章의 項目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基準은 主로 學校圖書館의 量的基準을 提示하고 있다. 美國의 學校圖書館의 本格의 基準은 1920年 부터로서 오늘까지의 基準의 改訂은 여섯번의 改訂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最近 數年間은 學校圖書館의 質의 基準을 必要로 하는 意見이 高調되고 있

다. 1956年에는 美國政府의 教育總局은 각州地方 및 全國의 으로 成案되어 實施하고 있는 學校圖書館基準을 比較檢討하여 質의 基準의 發展을 切望하는 傾向은 모름지기 이 基準과는 다른 角度에서 그의 發展을 模索하고 있지 않는가 밀어친다.

이 基準은 學校圖書館의 基本의 使命을 再強調하면서 人的問題와 物의 그리고 運營에 關하여 그의 要點을 記述하였다. 美國의 社會의 條件과 韓國의 現實과는 너무나 差異點이 많이 있지마는 아직도 韓國의 學校圖書館界가 全般的 建設期에 到達치 못하고 있고 一面 啓蒙期를 脫皮치 못하고 있는 實情에서 볼때 이 基準은 學校圖書館育成의 土台를 効率의 으로 確立시키는데 있어서 그 價值도 큰 比重을 가지고 있는 資料라고 믿어 진다. 이 基準의 內容의 한 部分인 24p, 25p에 있는 基準一覽表에 多少의 補譯을 하여 세로운 學校圖書館의 概要를 紹介하도록 하겠다.

### 三. 學校圖書館의 量的基準

學校圖書館의 量的基準의 要約 (在籍數 200名 또는 그 以上의 學校의 基準)

#### 1. 印刷資料에 關하여

1. 學校圖書館에 있어서의 收書의 境遇
  - A. 責任者は 主任學校司書, 學校司書는 校內의 各部의 部長과 同一한 待遇의者.
  - B. 學校에 있어서의 配置.
    - ① 學校圖書館의 넓이는 在籍學生 200名—550名 또는 200名 以下의 경우에는 座席數 44—55, 551名 또는 그 以上의 學校에서는 그의 一割의 座席數.
    - ② 學校文庫는 學校圖書館에서 短期

또는 長期의 貸出을 實施한다.

### C. 年間經費

- ① 正常의 圖書費는 200名—249名 까지의 在籍學校에는 最少限 1000 \$—1,500 \$, 250名 또는 그以上 的 在籍學校에서는 最少限 1人當 4—6 \$.
- ② 上記以外의 追加費로서 百科事典, 大辭典, 新聞, 雜誌, 小冊子, 再製本, 用品, 備品費를 對象으로 한다. 用品, 備品에 對하여는 學校의 必要에 따라 考慮할것.

### D. 集書의 量

#### ① 圖 書

在籍 200名~999名까지의 學校에서는 最低 6,000책~10,000책 1000名 또는 그以上의 學校에서는 最低 1人當 10책.

#### ② 雜 誌

一般的인 雜誌의 種類數는 最低限 다음의 數가 必要하다. 幼稚園에서 第6學年까지의 學校에서는 25種, 幼稚園에서 第8學年까지의 學校에서는 50種, 中學校는 70種, 高等學校는 120種, 以上的 種類數以外에 圖書館學과 教材에 關한 것은 最少限 5種.

#### ③ 新聞은 最少限 3種에서 6種.

#### ④ 팝프렐은 廣範圍한 主題를 包含하여 收集한다.

### E. 職 員

#### ① 司書(School librarian)

200名 在籍의 學校에는 Fulltime 의 司書 1名과 事務助手 1名을 基礎로 한다. 900名 또는 그以下의 곳에서는 300名 또는 그過半數에 對하여 司書 1名, 900名을 超過할

境遇에는 400名마다 또는 그의 過半數에 對하여 司書 1名.

#### ② 事務員(Clerk)

在籍 600마다 또는 그의 過半數마다에 事務員 1名.

### 2. 學校教師에 對한 職業上의 『集書의 境遇』

#### A. 責任者는 主任學校司書.

#### B. 學校에 있어서의 配置, 學校圖書館 施設의 一部分으로서 或은 學校에 있어서 他의 部分으로서 獨立된 一室을 配當한다.

#### C. 年間經費

#### ① 資料에 關하여는 最低 200~800 \$ 이것은 教師의 必要한 數, 또는 地域에 있어서 他의 職業의in 資料를 利用할 수 있는 便利에 依하여 決定한다.

#### ② 用品, 備品에 對하여는 學校의 必要性을 充足시킬 수 있는 程度의 資金.

#### D. 集書의 量

#### ① 圖書, 集書의 量은 學校의 必要性과 在籍數에 依하여 決定한다. (學校圖書館의 資料를 廣範圍하게 利用하는 것과 個人讀書와 指導計劃은 이것들의 集書의 量을 현저하게 低下되기 쉽다)

#### ② 學級使用을 依하여 購入하는 參考 資料는 種類와 數量은 地方의 教育 政策에 따라서 달라진다.

### E. 職 員

#### 事務員에 對하여는 學校圖書館과 視聽覺資料의 集成을 為한 人員數以外에 必要한 人員을 考慮한다.

### 2. 視聽覺資料의 集成에 關하여

#### A. 責任者는 主任學校司書 또는 視聽

覺資料의主任, 이것은 地方의 教育政策과 組織에 依하여 決定된다.

B. 學校에 있어서의 配置.

① 視聽覺센터 (이것은 學校圖書館施設의 한 部分으로서도 좋으며 또는 學校圖書館近處에 別個의 센터로서 定하여도 좋다)

② 短期 또는 長期貸出에 依하여 學校에도 集成을 만든다.

C. 年間經費

① 視聽覺資料를 備置하기 為하여는 在籍 1人當 教材費 (2~6\$)의 總計의 1%보다 적지 않게 한다.

D. 集書의 量

① 學級, 學校圖書館 또는 家庭에서의 利用을 為하여 多型의 視聽覺資料를 充分히 備置하도록 한다.

② 一年間에 1回 또는 그 以上 使用하는 Film 은 購入한다.

③ 一年間에 1回以上 使用된 Film-strip 와 레코--드는 購入하도록 한다.

E. 職 員

① 主任學校司書가 視聽覺資料의 管理와 責任의 一部分을 擔當하게 될 때에는 學校司書의 數와 事務員의 數는 각각 25%를 增加하는 것으로 한다.

② 主任學校司書가 視聽覺資料의 管理와 責任의 全部를 擔當하였을 때에는 學校司書의 數 事務員의 數는 각각 50% 增加하는 것으로 한다.

參考資料

1.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s, A. L. A. 1960.
2. The Bulletin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school principles Vol. 43, No. 250.

## 原稿募集

本誌에 掲載할 原稿를 會員 여러분에게 널리 募集하오니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圖書館學 및 事業에 關한 論文
2. 圖書館界의 뉴ース 人事 其他消息
3. 圖書館과 相關되는 隨筆(2百字 原稿紙 20枚內外)
4. 其他, 協會誌에 掲載할 수 있는 內容의 것 磨勘은

(毎月15日限)